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. 5. 10 선고 2021가단7855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양주시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석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2. 4. 12.

판 결 선 고 2022. 5. 1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17. 1. 17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7. 1. 18. 접수 제1104호로 마친
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B은 2016. 5.경 이후 지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,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1. 6. 기준으로 B의 지방세 체납액은 합계 20,331,180원이다.

나. B은 2017. 1. 17. 아버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(이하 '이 사건 지분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형등기소 2017. 1. 18. 접수 제1104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지분은 피고를 대신하여 아들인 B이 'C'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거나 B이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또한 설령 위 종중이 B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,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대상은 종중이 아니라 피고이므로, 이를 두고 종중이 진정명의를 회복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

아니 한다.

나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7. 1. 18. 접수 제110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선중

별지